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21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6호, 2025.11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19일

보건복지부장관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고시안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요양급여비용의 명세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84.7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85.3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6.5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103.5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107.3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96.2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회귀·필수의약품센터	109.4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」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101.3원

부 칙

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<u><신설></u>	<u>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</u>												
<u><신설></u>	<u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											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	<u><삭제></u>												
<u><신설></u>	<u>제2조(요양급여비용의 명세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</u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별 분류</th><th>점수당 단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><u>83.8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</td><td><u>84.2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<u>83.8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	<u>84.2원</u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별 분류</th><th>점수당 단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><u>84.7원</u>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</td><td><u>85.3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<u>84.7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	<u>85.3원</u>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<u>83.8원</u>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	<u>84.2원</u>												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<u>84.7원</u>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	<u>85.3원</u>												

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	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5.6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6.5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101.1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103.5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104.3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107.3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85.1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96.2원</u>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회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105.5원</u>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회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109.4원</u>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8.6원</u>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101.3원</u>